



◆ 본고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 '양돈법률상담코너'에 게시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주 ◆



김태욱 변호사

## 도로공사에 따른 보상관련 문의

**Q** 돼지농장의 전체면적 9필지의 5,753평에서 3,291평이 편입 확정되어 2,462평이 남고 사육사 절반과 25평 조립식 집도 포함됩니다. 도로공사 공문에 의하면 공사직원과 감정평가가사 입회하에 현장조사하여 구체적 보상액을 산정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전할 여력도 없고 폐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왕이면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변호사님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A** 양돈장을 새로 개설하기는 인근 주민의 반대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폐업보상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결국 이 전보상 또는 휴업보상을 받는 것을 전제로 그 보상금액이 현실성있게 잘 산정되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직접 편입되는 것은 일부이지만 결국은 양돈장 전체가 운영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돈장 전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하며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 용지용도 변경에 관한 문의

**Q** 경매를 통해 농장 건설 부지를 물색중인데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여기저기 찾던 중 공장 용지로 되어 있는 물건을 보았습니다. 어떤 농장은 공장 용지에 지어졌던데 그렇다면 공장 용지에도 농장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지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A** 일단 형질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축산법 제20조에 의하면 가축 사육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돈업의 경우에는 이를 시장,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경매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양돈장으로 등록 가능한지를 관할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문의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악취방지법을 고려하시어 반경 2km이내 민가가 없는 곳으로 양돈장 부지를 선정하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양돈**